

종중 상별위원회 규정

2009년 11월 13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주최씨준운공후손종중 규약 제7조를 시행함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종중의 건전한 발전과 종중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종원의 포상 및 징벌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상별위원회 구성)

- ① 종중 규약 제7조 3항에 의거 종중 회장은 필요시 '상별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구성할 수 있다.
- ② 상별위원회는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 8인 사무국장,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상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중회장으로, 부위원장은 종중 부회장으로 한다.

제4조(상별위원회의 기능) 상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종원의 포상 관계의 심의 결정
2. 종원의 징벌 관계의 심의 결정

제5조(상별위원회 소집) 종중 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별위원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1. 종중 규약 제7조 ①②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상별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제6조(상별위원회 의결기한)

- ① 상별위원회는 상별에 관한 심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상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② 단. 징계사항으로 해당자의 재심의 요구로 상별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성원 및 의결) 상별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결의 효력) 상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이 선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포상

제9조(포상 기준) 포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내외적으로 종중의 위상을 높인 자
2. 종중의 재정에 도움을 준 자
3. 종원 중 부모를 공양하고, 효행이 지극한 종원(효자, 효부)에 대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상별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포상 결정된 자
4. 종원 유고 시 공적이 현저하여 상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심의 의결된 자

제10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포상 또는 공로패 증정
- 2 상금 지급
- 3 공적비(추모비) 등 건립
- 4 기타

제 3 장 징계

제 11조(징계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1. 본회 규약을 위반한 자
2. 본회의 각급 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중상모략으로 종원 간의 이간 분쟁을 야기시킨 자
5. 본회의 재산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힌 자
6. 본회를 빙자하여 성금모금 행위를 한 자
7. 업무상 중과실로 종중에 손해를 입힌 자
8. 위계질서를 무시한 망종 행위를 한 자

제1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사과
2. 견책
3. 피해 변상
4. 2년 이상 참사 불허
5. 3년이상 자격정지
6. 종원의 자격상실

② 12조 ①항 4호의 2년이상 참사 불허는 각종 회의 및 종중 행사의 참여 금지 등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③ 12조 ①항 5호의 3년이상 자격정지는 각종 행사의 참례 참가가 금지되며, 종원의 자격이 기간내 정지된다.
- ④ 12조 ①항 6호의 자격상실은 영구히 종원의 자격이 상실됨을 의미한다.

제13조(징계대상자의 출석)

- ① 상별위원회는 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상별위원회가 해당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요구서를 개최일 3일전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출석요구서를 해당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등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출석요구서를 가족 등 관계인에게 송부할 수 있다.
- ④ 심의대상자가 해외체류, 형사 구속, 여행, 기타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소집일부터 50일 이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게 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 할 때는 그 진술없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⑤ 심의대상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상별위원회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상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⑥ 상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도 심의대상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궐석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14조(심문과 진술권)

- ① 상별위원회는 제13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의 출석 및 관계서류를 요구하여 심문 할 수 있다.
- ② 상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제15조(재심의 요구)

- ① 심의대상자의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별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 ①항의 요구가 있을 시 상별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심의대상자의 재심의 요구는 기각된다.
- ③ 제15조 ②항의 기각되는 경우 1차 상별위원회의 심의결과 가 확정된다.

제16조 (심의 결과의 통보)

- ① 상별위원회에서 상벌에 관하여 심의 의결된 경우 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상별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해당자에게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해당자에게 통지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15조③항의 조치에 심의대상자가 수령 거부를 하는 경우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척 및 기피)

- ① 상별위원회의 위원중 심의대상자의 직계존비속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상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② 심의대상자는 심의 의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 ②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별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8조(징계의 양정)

- ① 상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공적, 과오, 개선의 정, 징계 대상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② 심의 대상자가 상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 양형에 대하여 불복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의결 보고) 상별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은 가까운 시일에 소집되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상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상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상별위원회 처리 대장) 상별위원회는 각급 회의에 대한 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심의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